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(박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674 발 의 년 월 일:2024년 03월 11일 자:박 석 의원(1명) 발 의 차 섯 자: 강동길, 경기문, 고광민, 김경훈, 김규남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 김태수, 김혜영, 문성호, 민병주, 박승진, 박영한, 신동원, 신복자, 유정인, 윤종복, 이민석, 이병윤, 이상욱, 이새날, 이성배, 이숙자, 이승복, 이종태, 이효원, 임종국, 정지웅, 채수지, 최재란, 최진혁. 황유정 의원(35

명)

1. 제안이유

- 작년 연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학동 화재 등으로 재난 용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시민 불안감이 늘어나고 적절한 재난대피 요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-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, 화재 사상의 원인 중 연기·유독가스 흡입 관련이 40% 이상으로 나타난 만큼, 관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.

- 다.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 5조).
- 라. 시장이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·점검을 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,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기본법」등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 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 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"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재난 장소로부터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
 - 나.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
 - 다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 능인증을 받은 제품
 - 2. "안전교육"이란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.
- 제3조(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(이

- 하 "서울시"라 한다) 본청 및 직속기관·사업소·합의제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,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.
- 1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서울시 공사 및 공단
- 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에 따른 서울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
- 3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
- 4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- 5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- 6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- 7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- 8. 그 밖에 시장이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
- 제4조(안전교육) 시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사용법 및 신속한 대피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비용 지원)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확대, 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

수 있다.

제7조(사후관리) 시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·점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제4조(안전교육), 제5조(비용 지원), 제6조(협력체계 구축) 등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
 - ※ 단, 제6조(협력체계 구축)은 중앙부처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및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으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 상

○ 제4조(안전교육) 및 제5조(비용 지원)

나. 전제

- 제4조(안전교육)는 2024년 서울시 예산서 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교육 강화(안전교육 콘텐츠 개 발 및 보급) 비용을 준용하여 최초 일회만 반영하는 것으로 전제
- 제5조(비용지원)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1개당 단가 3,000원(조달청 혁신제품 단가)으로 전제하여 추계
- 또한,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는 1개소당 100개씩 총 200개소에 비치하는 것을 전제하여 추계
-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5~2029년)에 나누어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- 다. 추계기간 : 5년(2025년~2029년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비용(합계) ≒ 110,000천원(연평균 22,0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합계
	-	-	-	-	-	-	-
세입	소계(a)	-	-	-	-	-	-
	안전교육(제4조)	50,000	-	-	-	-	50,000
세출	비용 지원(제5조)	12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	60,000
10.435565	소계(b)	62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	110,000
	□ 총 비용(b-a)	62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	110,000

4. 덧붙이는 의견

○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, 종류 및 수량 변동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

추계분석관 김지혜

2 02-2180-7953

e-mail: kjh0123@seoul.go.kr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○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제4조(안전교육), 제5조(비용 지원) 등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
2. 세부추계내역

○ 총비용(합계) ≒ 110,000천원(연평균 22,000천원)

= 안전교육 비용 +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비용

= 50,000천원 + 6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합계
ullol	-	-	-	-	-	-	-
세입	소계(a)	-	-	-	-	-	-
	안전교육(제4조)	50,000	-	-	-	-	50,000
세출	비용 지원(제5조)	12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	60,000
	소계(b)	62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	110,000
	□ 총 비용(b-a)	62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	110,000

- 안전교육 비용 = 50,000천원
 - ※ 안전교육 비용은 2024년 서울시 예산서 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교육 강화(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) 비용을 준용
-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비용 = 60,000천원

= 3천원 × 100개 × 200개소

※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단가는 공공혁신조달플랫폼 단가를 준용

3. 상세사진



- 연기·유독가스를 차단하는 습식의 7종 필터 원단 사용
- ▶최대 15분간 유독가스 흡착·용해 및 여과
- ▶ 제품 착용 용이(좌우로 벌려 머리에 착용)
- ※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**재난안전제품**1) 인증

¹⁾ 인증 유효기간 3년, 재난현장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·지자체 수의계약 대상임